

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



(2026.01 기준)

순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1	제14조(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)	☞「상법」제 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,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2	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	☞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, 작업환경측정, 건강관리(건강진단 등),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, 통계의 기록 유지 등 사업장의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3	제16조(관리감독자)	☞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,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, 착용 교육, 작업의 지휘 감독,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4	제17조 [안전관리자] 제18조 [보건관리자] 제19조 [안전보건관리담당자]	☞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별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보건(안전)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, 조언 업무수행 ※건설업과 상시근로자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불가	500만원 이하 과태료
5	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	☞ (해당 시) 노사 동수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	500만원 이하 과태료
6	제25조(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)	☞ (해당 시)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(시행규칙[별표3]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 참조)	500만원 이하 과태료
7	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)	☞ 정기교육 : • 비사무직(12시간 이상/매반기), 사무직(6시간 이상/매반기) • 관리감독자 교육 : 반장, 조장, 생산과장, 생산부장 등 관리감독자 (연간 16시간 이상) ☞ 채용 시 교육 :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(1시간 이상), 근로계 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(4시간 이상), 그 밖의 근로자(8시간 이상) ☞ 작업내용 변경 시 :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(1시간 이상), 그 밖의 근로자(2시간 이상) ☞ 특별안전보건교육: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(2시간 이상,※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업무 작업자는8시간 이상), 그 밖의 근로자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(16시간 이상) ☞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: 건설 일용근로자(4시간 이상)	500만원 이하 과태료 (특별교육은 3,000만원 이하 과태료)
8	제32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)	☞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함	50만원 이하 과태료 (1인당)
9	제34조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	☞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(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/고지)	500만원 이하 과태료
10	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	☞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해야 함 (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 관리 :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)	500 만원 이하 과태료
11	제37조(안전표지의 부착 등)	☞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과 장소, 물질에 대한 경고, 비상 시 대처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,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(※시행규칙 별표7~9 기준-금지표지/경고표지/안내표지/지시표지/관계자외 출입금지) ☞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부착	500만원 이하 과태료
12	제38조(안전조치) 제39조(보건조치) 제40조(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)	☞ 기계/폭발성물질/전기 및 굴착/하역/중량물 취급 및 추락/토사붕괴/낙하물 등의 위험으로 부터 적절할 조치를 취하여야 함. ☞ 증기/폼/미스트 및 방사선/소음진동 및 정밀공작/단순반복 및 환기/채광/조명/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☞ 근로자는 제39조 및 제3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의한 사항을 지켜야 함.	・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・15만원 이하의 과태료
13	제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)	☞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	1년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14	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)	☞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(시행령 42조)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·이전·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·심사를 받아야 함	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최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)
15	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)	☞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(PSM)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함 (공정안전보고서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불가)	・적합통보전 가동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 ・미제출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6	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 제54조(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)	☞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 조치 ☞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	・위반 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・거짓보고 :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17	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	☞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해야 한다. ☞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징계 및 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.	
18	제57조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)	☞ 산재발생 시 은폐하지 않으며,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. -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: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,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 -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: 관할지청에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	・은폐 : 1년 이하 징역 또는1,000만원 이하 벌금 ・보고: 1,500만원 이하 과태료
19	제58조(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)	☞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	10억원 이하의 과징금
20	제63조(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)	☞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(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지시는 제외)	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21	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)	☞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*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/운영, *작업장 순회점검, *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장소, 자료 지원, *경보체계 대피방법 훈련, *위생시설 이용 설치 협조, *관계수급인 등에 대한 작업시기, 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확인	500만원 이하 벌금 위생시설 미협조(1,500만원 이하 과태료)
22	제65조(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)	☞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의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-유해·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·사용·운반·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23	제80조(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조치)	☞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·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해·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양도, 대여,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진열해서는 안됨	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24	제93조(안전검사)	☞ 프레스·전단기·크레인(2톤이상)·리프트·압력용기·곤돌라·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·원심기(산업용만 해당), 롤러기(밀폐형 구조 제외), 사출성형기(형 체결력 294킬로뉴턴이상), 고소작업대(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탑재 한정), 컨베이어, 산업용로봇 -검사 주기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시행규칙 제126조 참고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25	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제115조(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)	☞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,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의 관리요령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실시 ☞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(소분용기 포함)	・미게시: 5,000만원 이하 과태료 ・미교육: 300만원 이하 과태료(대상자 1명당) ・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6	제119조(석면조사) 제122조(석면해체,제거)	☞ 건축물 등을 철거 시 지정된 기관에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 ☞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 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함	・3년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, 5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・5년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27	제125조(작업환경측정)	☞ 소음(80dB이상)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 (산안법 시행규칙 별표[21]),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공지 -반기 1회/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☞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·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아니한 자	・1,000만원 이하 벌금 ・1,000만원 이하 과태료
28	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	☞ 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)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하며 휴게시설의 크기, 위치, 온도, 조명 등 설치·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.	・미설치: 1,500만원 이하 과태료 ・기준위반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9	제129조(일반건강진단) 제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	☞ 일반건강진단 : 사무직(1회 이상/2년), 비사무직(1회 이상/1년) ☞ 특수건강진단 : 소음·분진 등 노출 근로자(인자별로 1회이상/6~24개월) ☞ 배치전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 전, 작업전환 시 작업 배치 전 실시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30	제164조(서류의 보존)	☞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 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·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, 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,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노사협의체 회의록(2년),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대하여 기록한 서류, 석면조사 서류, 작업환경측정·건강진단 서류 등(3~30년간 보관)	300만원 이하 과태료 (각 서류마다 적용)

Health & Environment Consulting
에이지엔이컨설팅(주) (T.062-972-7222)